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1997. 7.

최 의 철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 병 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이 금 순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人權情報센터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북한인권 현황	2
1. 북한내 인권상황	2
2. 북한이탈주민 현황	7
3. 북한의 대응	10
III.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	13
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13
2.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	13
3. 재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방안	17
IV. 정책적 고려사항	19
1. 북한인권 개선대책방향	19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구축	22

I. 문제제기

-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념하에 일인독재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령론을 주창하고 세습을 통한 체제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여 왔음.
- 남북관계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경제난·식량난 등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북한인권문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인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행위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4국의 공통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

II. 북한인권 현황

1. 북한내 인권상황

○북한의 인권상황은 경제난·식량난의 악화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가. 생존권 위협

○95~96년의 홍수피해로 인해 약 500만명(전체인구의 약 1/4)의 국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¹⁾

- 통일원의 추계²⁾에 의하면 97.6말 현재 국제지원·수입 66만톤, 7월 이후 국제지원 확정량 27.5만톤 등을 감안하더라도 40만톤 이상이 부족함.
- 중앙배급의 지역간 편차가 심하여 1인당 1일 배급량이 일부지역에서 96년 300g이었던 것이 97년부터 100~150g(반공기 분량)으로 줄어 들었음.

1) WFP는 아사상태에 있는 인구를 기아에 직면한 어린이 260만명을 포함한 470만명으로 평가하고 있음. 「연합통신」, (1997.3.21).

2)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337호 (97.6.28~7.4), pp. 32~36.

- 영양실조와 질병감염으로 인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약품 부족과 치료시설 낙후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식량기구(WFP)」의 베티니(C. Bertini) 사무국장은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부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와 감염성 설사 및 급성 호흡기 질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함.
 - 이와 같은 참담한 실정은 황장엽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음.

나. 공개처형

- 북한은 정치범·경제범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이나 총살형, 혹은 화형을 실시하고 있음.³⁾
- '97.1 「국제사면위원회(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온 공개처형 실태를 폭로하였음.⁴⁾
 - 동 보고서에 의하면, 70~92년 원산·청진·함흥·신의주·평양 등

3) 국제사면위원회(AI)는 *Journal of the Law Association for Asian and the Western Pacific*에 실린 논문을 인용하여 북한의 공개처형이 1951년 정령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4) AI는 97년 연례인권보고서에서도 미확인 정보를 인용하여 공개처형이 진행되어 왔음을 언급함. AI,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7* (London: AI, 1997), pp. 205~206.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23명이 공개처형되었음.

○식량난 및 이념약화에 따른 사회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5년 말~96년초 기간동안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됨.

- 황장엽은 95년 평양 형제산구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 처형되었다고 증언함.⁵⁾

- 정갑열·장해성('96.5 입국)은 95년 하반기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고 증언함.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97년 상반기에도 공개처형이 지속되었음.

- 김원형('97.5 입국)은 97년 3월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증언함.⁶⁾

다. 정치범수용소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수용하는 정치범수용소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⁷⁾, 적어도 10여 곳 이상에 20만명이 수용되어 있는

5) *Korea Herald* (July 10, 1997).

6) 이밖에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조선일보」 (1997.5.12).

7)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존재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음. 「조선중앙통

것으로 추정됨.8)

- 평남 개천, 함남 요덕, 함북 화성·회령·청진 등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각 수용소는 종신수용지역인 완전통제구역과 출소가 가능한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9)에 따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당·정 및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분자’ 등 정치사상범으로 분류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음.

신」(1997.6.24).

- 8)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56년 발생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한 것이며, 최초로 정치범수용소가 설치된 지역은 58년말 평남 북창군 소재 독장광산임.
- 9) 「10대원칙」의 주요내용.
 - 제1조 1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체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제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 제3조 5항: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여도 비상사건화하며 이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 제3조 6항: 수령님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위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게제한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화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 등을 정중히 취급하고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 9항: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 당의 정책을 비방증상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반당적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화묵과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 제4조 10항: 수령님의 교시와 지도자동지의 지시,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교류를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의 간부들이 분기별로 주민들의 정치적 동향을 심사·보고함.
- 남북억류자, 북송교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음.
- 최근에는 김정일 비난자 및 경제문제 불평자, 체포·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라. 강제이주 및 장애인 격리수용

- 정치적 불신자에 대한 강제이주는 물론 신설공업지대나 탄광지대의 주민들에 대한 집단이주가 계속 실시됨.
 -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의 경우 3~4년을 주기로 주민소개작업이 단행되고 있으며, 94년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상당수 주민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고 함.
- 도시미관과 산악제한을 위해 난쟁이 등 유전적 장애인들을 제한된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있음.¹⁰⁾

마. 기타 정치적·시민적 권리

- 북한은 김일성 사후 어떠한 선거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10)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난쟁이 집단이주는 60년대경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수용소가 설치되었음.

방송을 통해 복수입후보제 등 경쟁선거를 비판하였음¹¹⁾.

- 투표방식에 있어서도 반대의사를 기표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사상·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

-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모임을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하여 노동교화형에 처함.
- 헌법규정과는 달리 신앙생활은 강력히 통제되고 있으며, 근래 설립된 종교시설에서도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거행됨.¹²⁾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가 완벽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불법구금과 고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2. 북한이탈주민 현황

○식량난 및 경제난 악화, 사회통제 이완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중국·러시아 등으로의 탈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국 및 북한 공안에 의한 체포 및 송환, 불법처형 등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음.

11) 「민민전방송」 (1996.6.13).

12) 북한은 금년 성도절, 열반절, 석탄절 등 불교행사를 거행하면서 반정부·통일 투쟁을 선동함.

가. 국내 북한이탈주민

○금년 상반기('97.1~6)의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5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4명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하였음.

- 작년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51명임.

○최근 2년 동안 개별탈출보다 집단탈북 및 가족탈북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97년 상반기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중 가족단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97년 상반기중 가족단위의 입국은 27명(6건)으로 전체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을 차지함.

○가족단위의 집단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식량난의 악화로 북한의 사회통제가 이완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인 바,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

○현재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은 약 1,5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재외공관에 망명을 타진한 수는 5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통일원의 추정의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 1,200명, 러시아에 300명이 불법체류하고 있음.

- 과거와는 달리 최근 탈북은 엘리트계층, 기본계층, 가족동반 탈출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형법에서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나 월경 및 망명 시도 등의 행위를 '반국가범죄'로 규정(형법 제47조)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 중국·러시아로부터 송환당한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밀감옥에 수용되어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뒤 극형에 처해지고 있음.
 - '96.5말 한국으로 망명하려다 러시아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 당국에 인계된 북한이탈주민 1명이 송환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음¹³⁾.
 - '96.9 AI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를 크게 우려하였고, 송창근과 최경호 등 수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송환·처형되었다고 추정함.
- 중국은 60년대초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86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음.
 - 중국 공안당국의 이러한 강제송환은 '93.11 「길림성 변경관리 조례」가 통과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⁴⁾

13) 일본 「NHK」 (1996.5.27).

14)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동 조례에 의해 94~95년 동안 중국에 불법체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 등 제도적으로 국내입국의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러시아 지방당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음.

- 러시아정부는 북한과 새로 체결한 「러시아·북한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97.1.24)을 통해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방당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북한의 대응

○북한은 인권에도 ‘계급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억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함.

- 북한은 “자기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라고 주장함.¹⁵⁾

○북한은 서구세계의 대북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이고 공세적

류하던 탈북주민 14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됨.
「동아일보」(1996.12.26).

15) 「로동신문」(1995.6.24).

으로 대처하고 있음.

- 북한은 '정치적 자주권'과 '개발권'을 앞세워 서구의 인권개선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함.
- 인권문제는 주권사항으로 외세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앞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유엔산하 인권관련 위원회에 입후보하고 미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비난하는 등 대외 인권외교를 강화하고 있음.

○북한은 자신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인권문제의 화살을 남한으로 돌리기 위해 한국내 출소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음.

- '97.5.14 「남조선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위원장 정준기)는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등 3인의 송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한적」에 보냄.
- 북한은 출소공산주의자인 김인서의 송환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인권위」 및 국제인권기구, 국내인권단체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음.
- 또한 클린턴 대통령 부부('97.4.24), 미국 주요인사(6.5)에게 서한을 보냄.

○북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을 계속 위협하고 있음.

황장엽의 서울도착 성명('97.4.20)에 대해 “이북을 중상하고 이남을 찬미하는 미친 자의 소리”라고 비난한 데 이어, 황장엽의 기자회견(7.10)을 ‘대북 선전포고’로 규정함.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

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들이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
- 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국가유공자 차원의 배려에서 사회부조적 차원의 특별보호로 전환,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사회정착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함.
 -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평균 4,500만원 수준에서 1,700만원 선으로 삭감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력이 현저히 저하됨.
 - 이들이 취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직업알선을 하는 것은 무의미함.

2.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

가. 제도 정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96년말 통일원에 「인도지원국」을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제정하여 '97.7.14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법률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년간 정착지원시설내 보호와 2년간 거주자 보호를 실시함(법률 제5조 3항).
- 체계적인 지원(사회적응교육,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을 건립함(법률 제10조).
- 북한 및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심사를 통해 인정함(법률 제14·15조).

○북한이탈주민 보호문제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일원을 총괄조정부서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관련부처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함.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호를 결정함.

- 인도주의원칙을 바탕으로 체류국과 협의하여 보호요청자를 전원 국내로 송환함.

나. 사회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법률 제15조, 시행령 제40조) 통일원은 구체적인 사회적응교육방안을 마련함.

- '97.5 2주간(5.19~31)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실험 교육을 실시하였음.
- 주관부처인 통일원이 유관부처와 협의하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파악함.

○ 정착의지 제고, 민간참여 활성화, 기타 정착지원방안과의 연계라는 방향하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의 학습을 위해 기본교육을 강화함.

- 사회적응교육은 크게 우리 사회체제에 대한 소개교육, 생활안내교육,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됨.
- 교육단계별로 분야별 지침서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민간단체가 참여함.

○ 연령, 학력 및 경력, 탈북경로, 개별 희망사항 및 관심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교과과정, 교육기간을 조정함.

- 교육대상은 크게 청소년과 성인으로 분류하고 교과과정은 공통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함.
- 교육기간을 개인성취도 및 필요도에 따라 조정함.

다. 직업훈련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

에 취업하는 것이 관건인 바, 희망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함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43·44조).

-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방
안을 마련함(시행령 제45조).

○북한 및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과 경력의 인정을 위해 상세한 인
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시행령 제38~39조), 학·경력 인정에
따른 보충교육안도 마련함(시행령 제40조).

라. 사회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들의 원만한 사회정착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social supporting system)를 마련함.

-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물질
적 지원이나 개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구성원들의
수용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결혼, 개인가정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 입양주선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유도함.

○북한이탈주민들 서로가 어려움을 달래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친목단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이들의 삶을 소개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남북한 서로알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상호간 이해의 기회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일의식과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

3. 재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방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국내수용에 관한 문제임.

- 새로운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재외공관 포함)에 보호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들을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 새로운 법률 시행과정에서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이 재외 공관장에게 보호요청을 할 경우 현지국 정부의 협조없이선 전원 국내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남북한간의 관할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바, 국제법상 난민처리 차원에

16) 북한이탈주민의 용어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인도주의 원칙은 동 법률 제4조, 보호신청은 동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음.

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동시수교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북한의 공민임.
- 국제관례상 모든 국가는 난민관련조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¹⁷⁾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이들 정부가 보호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UNHCR나 국제난민구호기구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허용해야만 함.

○중국·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함.

-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러시아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부의 협력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 및 응급구호 의무가 현지국에 있음을 중국·러시아 정부에 주지시킴.

17)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은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IV. 정책적 고려사항

1. 북한인권 개선대책방향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북한측의 노력이 요구되나, 현상황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 의지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임.

가. 대북 직접접촉

○효과적인 대북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을 요구해야 함. 국제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아 개혁·개방, 민주화 등 포괄적인 요구는 비현실적임.

- 인권개선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이나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정책은 그 효용성이 의문시됨.

○북한처럼 극심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대상국에게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해야 하는 바,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제협약이 정하는 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여야 함.

- 비인도적 처형, 고문 등의 금지를 요구함.

- 제출기한을 10년 이상 넘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의 이행과 관련한 첫 정기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하도록 권고함.

- 95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형법 전문을 밝히도록 요구함.

○정부 및 적십자 등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납북억류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수용소 폐쇄, 생존 국군포로 및 유해 송환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분명히 전달하여야 함.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식량난이 악화된 지역에 직접 식량을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조건 개선보다는 군비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인권문제와 군축문제 연계방안을 고려함.

○대북 직접접촉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지도층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일관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됨.

-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단체, 여론주도층 및 언론등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문제제기를 적극 지원함.

나.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 일반적으로 인권보장문제는 국가주권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나, 현 국제정세는 개인의 안보문제를 국제적 안보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인권문제도 국제적 안보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
 - 도덕적으로 인간은 전통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인성을 보존·보호해야 함.
 - 정치적으로 인종청소 및 의도적 기아 등 대량살상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배타적인 국가주권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활용하여 인권보장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UN기구, 국제인권단체 및 우방국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르완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UN,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일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대북 식량지원 및 교류·협력 확대가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자적 접근을 강화

하여야 함.

- 또한 교류·협력 확대과정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구축

- 대량탈북을 염두에 둔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우리의 대비자세임. 특히 우리는 정치·경제적 안정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가. 제도적 보완

- 탈북주민들의 정착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를 보완해 나감.
 - 19개 유관부처와의 협조업무체계를 문서화하고, 실무담당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건립('98.11 완공 예정) 이전에도 통일원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사회적응교육을 위해서 전문인력(담임관 및 강의요원)과 교육보조요원(민간단체 자원봉사요원)의 확보 및 훈련이 필요하며, 강의요목 및 교수지침, 적극적인 참여유도방안, 거주지 보호와

의 연계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나. 국내교육 및 홍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함.
 - 언론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및 어려움 등을 객관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시민단체들의 참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를 활성화함.
 - 북한이탈주민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 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다.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

- 대량탈북사태를 대비하여 별도의 대응책을 수립하고 대량탈북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
 -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할 때 북한내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부는 주변국들과 대량탈북의 발생유형과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협조체계를 구축함.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는 국경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심사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함.
대량난민 발생시 미국과 일본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협력을 도모함.

發刊資料目錄

〈학술회의 총서〉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研究報告書〉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 96-29 한·중 안보협력 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 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 97-01 大만核廢棄物 북한搬入의 問題點
- 97-02 鄧小平사후 中國의 내정과 한반도정책 전망
- 97-03 최근 北한의 對外정책 동향과 전망
- 97-04 한반도의 미사일 문제: 현황과 대응방안
- 97-05 北한인권 개선 및 北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年例情勢報告書〉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論叢〉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統一研究論叢 第5卷 2號(1996.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북한인권백서 199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統一情勢分析 97-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人權情報센터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2528(代), FAX: 901-2542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7년 7월 일

發行日 1997년 7월 일
